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 신설〉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66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가상자산 거래 규제 신설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8조, 안 제9조 등)	3
[참 고]	4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8.

다. 회 부 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가상자산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될 예정임.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 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행법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의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고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조세 회피,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외국환에 준하여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나.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안 제3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
- 다. 가상자산거래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치를 국경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항제23호).
-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알선·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가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함(안 10조).
- 사. 재정경제부장관은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IV. 검토의견

1. 가상자산 거래 규제 신설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8조, 안 제9조 등)

현 행	개 정 안
○ 적용대상(§2)① <u><신 설></u> ○ 정의(§3)① <u><신 설></u>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8) - <u>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제3항)</u> - <u>전문외국환취급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제4항)</u>	○ 적용대상(§2)① - 국경 간 가상자산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제6호) ○ 정의(§3)① - “<u>가상자산</u>”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제21호) - “<u>가상자산사업자</u>” :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제22호) - “<u>가상자산거래</u>”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치를 국경 간 이전하는 것(제23호) - “<u>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 :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의 중개·알선·대행에 관한 업무(제24호)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8) - <u>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제3항)</u> - <u>전문외국환취급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제4항)</u>

현행	개정안
- 기재부장관은 <u>외국환업무</u>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7항) ○ <u>외국환중개업무</u> 등(§9) - <u>외국환중개업</u>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1항) - <u>외국환중개회사</u>는 ‘합병 또는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양도·양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재부장관에게 신고(제3항) - 기재부장관은 <u>외국환중개업무</u>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u>외국환중개회사</u>에 대하여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항) - <u>외국환중개회사</u>가 외국에서 <u>외국환중개업무</u>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5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u>외국환업무와 가상자산거래업무</u>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u>다만, 가상자산거래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제7항) ○ <u>외국환중개업무</u> 등(§9) - <u>외국환중개업</u> 또는 <u>가상자산거래중개업</u>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1항) - <u>외국환중개회사</u> 또는 <u>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u>는 ‘합병 또는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양도·양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재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제3항) - 기재부장관은 <u>외국환중개업무와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u>외국환중개회사</u> 및 <u>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u>에 대하여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u>다만, 가상자산거래중개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제4항) - <u>외국환중개회사</u>가 외국에서 <u>외국환중개업무</u>를 하거나 <u>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u>가 외국에서 <u>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현행	개정안
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5항)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포섭함에 따라 법 체계 정비> ○ 업무상의 의무(§10) -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u>은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제1항) <신 설> ○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11) - 기재부장관은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u>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인가의 취소 등(§12) - 기재부장관은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9조에 따른 등록·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 포함)</u>의 업무 제한 또는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할 수 있음(제1항)	○ 업무상의 의무(§10) -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및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은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제1항) - <u>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은 가상자산거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제3항) 1.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2. 거래 정보를 조작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행위 3. 내부 거래 정보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11) - 기재부장관은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과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를 포함)</u>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인가의 취소 등(§12) - 기재부장관은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9조에 따른 등록·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 포함)과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의 업무 제한 또는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할 수 있음(제1항)

현행	개정안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u>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u>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u>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u>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u>외국환중개업</u>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u>외국환업무</u>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음(제4항) ○ 보고·검사(§20) - 기재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u>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제2항) - 기재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만 해당</u>)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u>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사업자의</u>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u>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또는 가상자산거래사업자의</u>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u>외국환중개업</u>무나 <u>가상자산거래중개업</u>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u>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업</u>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음(제4항) ○ 보고·검사(§20) - 기재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제2항) - 기재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

현행	개정안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u>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3항) - 기재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u>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4항) ○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21) -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u>국세청장</u>, 관세청장, 금감원장 또는 수은행장에 직접 통보하거나 한은총재,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u>,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u>국세청장</u>, 관세청장, 금감원장 또는 수은행장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 - 기재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u>자금의 이동</u>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제2항) ○ <u>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22)</u> (생략) ○ 권한의 위임·위탁 등(§23) 기재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 가능(제1항)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u>, <u>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3항) - 기재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u>, <u>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4항) ○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21) -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u>가상자산거래</u>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감원장 또는 수은행장에 직접 통보하거나 한은총재,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u>, <u>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감원장 또는 수은행장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 - 기재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u>자금의 이동</u>, <u>가상자산거래</u>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제2항) ○ <u>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22)</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권한의 위임·위탁 등(§23) 기재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u>, <u>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 가능(제1항)

현행	개정안
○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24) 기재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u>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2항) ○ 사무처리 등(§25) - 기재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분석하는 기관을 지정·운영 가능(제2항) ○ 벌칙(§27)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함 <신 설> ○ 벌칙(§27의2)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함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u>외국환업무</u>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u>외국환업무</u>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 <u>외국환업무</u>를 한 자를 포함)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u>외국환중개업무</u>를 한 자(제9	○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24) 기재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2항) ○ 사무처리 등(§25) - 기재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 <u>가상자산 거래</u>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분석하는 기관을 지정·운영 가능(제2항) ○ 벌칙(§27)① (현행과 같음) 6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u>가상자산거래업무를 한 자</u> ○ 벌칙(§27의2)①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u>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업무를 한 자</u>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u>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업무를 한 자</u>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 <u>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업무를 한 자를 포함</u>)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u>외국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u>

현행	개정안
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u>외국환중개업무</u>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u>외국환중개업무</u>를 한 자를 포함) ○ 몰수·추징(§30)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u>내국지급수단</u>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 ○ 과태료(§32)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u>외국환업무</u>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u>외국환중개업무</u>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u>외국환중개업무</u>를 한 자	<u>산거래업무</u>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u>외국환중개업무</u> 또는 <u>가상자산거래업무</u>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u>외국환중개업무</u> 또는 <u>가상자산거래업무</u>를 한 자를 포함) ○ 몰수·추징(§30)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u>내국지급수단</u> 및 <u>가상자산</u>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 ○ 과태료(§32)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u>외국환업무</u> 또는 <u>가상자산거래업무</u>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u>외국환중개업무</u> 또는 <u>가상자산거래업무</u>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u>외국환중개업무</u> 또는 <u>가상자산거래업무</u>를 한 자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를 외국환거래에 준하여 규제하고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외국환거래법」의 정의규정에 신설하면서(안 제3조제1항제21호·제22호), 가상자산 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제를 신설하고(안 제8조), 가상자산 거래 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이하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과 유사하게 업무상의 의무(안 제10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안 제11조), 등록·인가의 취소(안 제12조), 보고·검사(안 제20조) 벌칙(안 제27조, 안 제27조의2), 몰수·추징(안 제30조), 과태료(안 제32조) 등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기존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규정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동 법에 규율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등이 가상자산 이체내역을 매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하고(안 제25조제2항), 해당 정보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에 통보하며(안 제21조), 재정경제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법²⁾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급수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임.

또한, 동 법의 적용범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2010년대부터 가상자산의 등장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 도입으로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전통적 방식인 은행을 통한 국경 간 거래보다 가상자산·핀테크 방식 등 대안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³⁾.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적발된 외환범죄 금액 11조원 중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액은 9조원으로 전체 외환범죄 금액의 81.3%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업자가 엄격한 확인 절차 없이 마약 구매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⁴⁾되기도 함.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거래정보를 외환당국이 파악하는 등 가상자산을 범죄 등에 악용하는 행위 및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

3) [참고 1] 참조

4) 동아일보, ‘피싱-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7만개 넘겨 11억 부당 이익’, 2024. 8. 21.

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거래정보를 외환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거래를 외국환거래에 준하여 규제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불법적인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를 방지하고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외국환거래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는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⁵⁾. 동 법의 적용 대상은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지급·수령 등 행위 등으로 규정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외국환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외거래성을 가진 거래’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⁶⁾(이하 “「특금법」”)에서 불법적인 가상자

5)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적절한 외환거래 조정과 관리’를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구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하는 것을 목적 조항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현행법 제정 시 삭제됨.

6) 「특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 해외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에서 중첩적으로 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실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⁷⁾이 2023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9조(양벌규정)

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년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동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들은 가상자산거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10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이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법 제12조8)).

또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금법」⁹⁾에서도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제16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특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정보수집, 신고
말소·정지, 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제4조제1항¹⁰⁾ 및 제4조의2¹¹⁾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 가. 송금인의 성명
 -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 해외송금
 - 가. 송금인의 성명
 -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
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
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등을 보고해야 함.

참고로, 「특금법」 제9조12)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등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등 기관 간 자료 공유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음.¹³⁾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특금법 시행령」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③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매월별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안·타법 비교]

구 분		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특금법
정의· 대상	가상자산	§3①21.	§2 1.	§2 3.
	가상자산사업자	§3①22.	§2 2.	§2 1. 하
	가상자산거래업, 가상거래중개업	§8, §9	-	-
가상자산 국외적용		미규정	§3	§6
주무부처		기재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 신고	등록·신고	§8, §9	-	§7
	취소·말소·정지	§12.	§13, §15	§7, §15
보고·정보활용		§20, §21, §25	§9, §12, §13, §14, §16	§4, §4의2, §5의3, §8, §10, §10의2, §11, §12의2, §15의2
제재	벌칙	§27, §27의2	§19	§16, §17, §18
	몰수·추징	§30	§20	미규정
	양벌규정	§31	§21	§19
	과태료	§32	§22	§20
	과징금	§12의2	§17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이전업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포함

* 「특금법」은 제2조제2호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

다만, 「외국환거래법」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이 ‘대외거래성을 가진 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상자산 거래의 대외거래성에 방점을 둔다면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 통보시기·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된 규정을 둘 실익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음. 법원은 한국과 중국 간 송금영업을 수행하면서 국경 간 송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사안에서 미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하기도 하였음¹⁴⁾.

그러나 외국환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나 조세회피방지, 불공정거래 적발의 효율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규제 장치를 동원하는 것은 동 법의 목적 등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⁵⁾. 특히, 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¹⁶⁾

참고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영국·미국·일본·싱가폴 등은 ‘스테이블코인¹⁷⁾’을 외환과 유사하게 간주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기능별 규제 원칙에 따라 규율하는 추세임¹⁸⁾. 다만, 개정안은

14)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8358 판결. 다만 동 판례를 고려하면 현행 법령만으로도 가상자산 송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할 수도 있음.

15) 정순섭·주성환,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체계와 신종 거래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vol 17 no.2, 2024, 61면.

16) 「외국환거래법」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가상자산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 가치를 법화나 국채와 같이 안전자산에 연동시키는 코인

18) [참고 2] 참조.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상자산’ 전체의 이체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므로 해외 입법례와 부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정부는 불공정 행위나 자금세탁 등을 적발·방지하려는 「특금법」상 규제와 달리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규제 간 중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참고로, 은행의 경우에도 「은행법」상 은행업의 인가¹⁹⁾와 함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병행하고 있음.

둘째, 가상자산거래업무 및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 등록 등 규제 신설이 중복규제에 해당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19)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사유를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②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에 한정), ③ 이 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 포함), ④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 제공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음.²⁰⁾

외국거래소 및 개인지갑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등 가상자산을 국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경간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업 등록 규제 신설 시, 등록요건을 새롭게 갖추어 가상자산거래업자로도 등록해야 함. 그런데 동 개정안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가상자산사업자는 당초 「특금법」상 신고수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신설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10월 22일 기준으로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개인데, 전부 ‘가상자산 이전’(아래 표의 신고업무 중 ‘다.’)을 업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따라서, 현행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사업자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5. 10. 22.)]

연번	서비스명	법인명	신고업무*	신고접수	신고수리
1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가 ~ 마	2021.8.20.	2021.10.06.
2	코빗	주식회사 코빗	가 ~ 마	2021.9.10.	2021.10.20.
3	코인원	주식회사 코인원	가 ~ 마	2021.9.10.	2021.11.25.
4	빗썸	주식회사 빗썸	가 ~ 마	2021.9.9.	2021.12.02.
5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다 ~ 마	2021.9.17.	2021.12.01.
6	고팍스	주식회사 스트리미	가 ~ 마	2021.9.24.	2021.12.09.
7	BTX	차일들리 주식회사	가 ~ 마	2021.9.24.	2021.12.09.
8	포블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다 ~ 마	2021.9.24.	2021.12.21.
9	코어닥스	(주)코어닥스	가 ~ 마	2021.9.24.	2021.12.17.

연번	서비스명	법인명	신고업무*	신고접수	신고수리
10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다 ~ 마	2021.9.23.	2021.12.23.
11	오케이비트	주식회사 포리스닥스코리아 리미티드	가 ~ 마	2021.9.23.	2021.12.30.
12	빗크몬	주식회사 골든퓨처스	다 ~ 마	2021.9.24.	2021.12.30.
13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다 ~ 마	2021.9.23.	2021.12.30.
14	보라비트	주식회사 뱅코	가 ~ 마	2021.9.24.	2021.12.30.
15	코다(KODA)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다, 라	2021.9.17.	2021.12.17.
16	케이닥(KDAC)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다, 라	2021.9.24.	2021.12.17.
17	오하이월렛	주식회사 월렛원	다, 라	2021.9.24.	2021.12.30.
18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가 ~ 다	2021.9.24.	2022.01.07.
19	오아시스 거래소	(주)가디언홀딩스	가 ~ 마	2021.9.24.	2022.02.10.
20	커스텔라	주식회사 마인드시프트	다, 라	2022.5.24.	2022.06.27.
21	인피닛블록	주식회사 인피닛블록	다, 라	2023.5.10.	2023.08.07.
22	디에스알브이 랩스	(주)디에스알브이랩 스	다, 라	2023.10.6.	2024.09.25.
23	비덱스	비덱스 주식회사	다, 라	2024.2.14.	2024.09.25.
24	INEX(인엑스)	(주)인피니티익스체 인지코리아	다 ~ 마	2023.12.21.	2024.10.15.
25	돌핀(Dolfin)	(주)웨이브릿지	나~마	2023.9.20.	2024.12.18.
26	바우맨	(주)해피블록	나 ~ 마	2024.01.04.	2025.01.17.
27	로빗	(주)블로세이프	다, 라	2024.01.03.	2025.08.29.

* 신고업무: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다. 가상자산을 이전
라. 가상자산을 보관·관리
마.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정안에 신설되는 등록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셋째, “가상자산거래”의 정의와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거래중개업”의 등록 및 인가요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가상자산 거래는 개정안의 핵심개념인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치를 국경 간 이전하는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의 정의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가상자산 이전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에서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특히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아닌 분산원장상 데이터의 형태로 형성되어 관리되므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²¹⁾ 가상자산이 기록되는 분산원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

21) 가상자산이 콜드월렛(cold wallet, 별도 하드웨어 등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없이 작동 가능한 가상자산 지갑)에 저장되어 보관되는 경우라면 해당 콜드월렛의 물리적 소재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핫월렛(hot wallet,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가상자산지갑)에서

있는 노드(node)들의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인데, 분산원장에 기록된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가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된다고 볼 근거는 없기에 ‘장소적 관점’보다는 ‘인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²²⁾

다음, 개정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같이 가상자산거래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의 인가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요건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타법의 사례와 같이 법률에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특금법」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²³⁾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매매업·중개업·보관업 등으로 업역을 세분화하여 유형별 인가·등록·신고 등의 진입규제와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데, 대부분 인가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²⁴⁾²⁵⁾.

저장되어 보관되는 경우는 판단하기 어려움.

22) 정순섭·주성환,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체계와 신종 거래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vol 17 no.2, 2024, 69-70면.

23) 「특금법」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4) 예를 들어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업 인가요건을 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법률안 발의 현황]

의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소관위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의원	2025-06-11	정무 위원회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의원	2025-07-2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의원	2025-07-2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2025-08-21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2025-09-22	

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20조(디지털자산업의 인가) ①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
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
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디지털자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디지털자산업의 종류

2. 이용자의 유형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디지털자산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디지털자산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36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
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디지털자산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디지털자산거래 등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안정성을 확보할
것

9. 디지털자산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
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25)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중개회사 신설 등 일부 조항의 경우 취지·내용이 불분
명한 문제와 세부규율 미비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현재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알선·대행 업무에 대한 수요가 불투명하여 가상자산거래중
개회사의 신설 필요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확인의무 부
과는 세부 규율방안 마련후 하위규정과 같이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의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소관위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김재섭의원	2025-09-25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최보윤의원	2025-10-01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2025-11-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2025-12-15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 ② (생략)	제2조(적용 대상)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국경 간 가상자산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u>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① ----- -----. 1. ~ 20. (현행과 같음) 21. <u>“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u> 22. <u>“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u> 23. <u>“가상자산거래”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치를 국경 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u> 24. <u>“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란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의 중개·알선·대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u>외국환중개업무</u>를 하여야 한다. ③ <u>외국환중개회사</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u>외국환중개업무</u>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u>외국환중개회사</u>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하는 자 간의 <u>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에 관한 영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u>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u>”라 한다)는----- -----<u>외국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를-----. ③ <u>외국환중개회사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u>----- ----- ----- ----- ----- 1. 2. (현행과 같음) ④ -----<u>외국환중개업무와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 -----<u>외국환중개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u>----- ----- ----- ----- 다만, <u>가상자산거래중개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u>

현행	개정안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u>하려는</u>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외국환중개회사</u>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u>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u>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u><신설></u>	<u>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 -----<u>하거나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를 하려는</u>----- -----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외국환중개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u>----- -----.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 ----- --<u>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와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이하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이라 한다)</u>-----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은 가상자</u>

현행	개정안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u>산거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u> 2. <u>거래 정보를 조작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행위</u> 3. <u>내부 거래 정보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는 행위</u> 4.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u>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 ----- ----- -----<u>같다</u>)과 <u>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u>-----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u>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 -----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이----- ----- -----

현행	개정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u>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u>경우</u> 5. (생략)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u>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u>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의3. (생략)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u>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u>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u>외국환중개업</u>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 14. (생략) ②·③ (생략)	-----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과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의</u>-----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만 해당한다)</u> 5. (현행과 같음) 5의2. -----<u>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사업자</u>----- ----- -----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 -----<u>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또는 가상자산거래사업자</u>----- ----- ----- 6. -----<u>외국환중개업무나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 ----- ----- 7.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u>외국환업무</u>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 ⑤ (생략) 제20조(보고·검사) ① (생략)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u>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u>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 ----- ----- ----- ----- ----- -----<u>외국환업무 또는</u> <u>가상자산거래업무</u>----- -----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고·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u> <u>산거래사업자등</u>----- ----- -----. ③ ----- ----- -----<u>외</u> <u>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거래</u> <u>사업자등,</u>----- ----- -----.

현행	개정안
④ 재정경제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u>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u>이동</u>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u>,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u>이동</u>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u>외국환거래의</u> 비밀보장) (생략)	④ ----- -----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 ----- -----<u>이동, 가상자산거래</u>----- -----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 -----. ② ----- ----- -----<u>이동, 가상자산거래</u>----- ----- -----. 제22조(<u>외국환거래 등의</u> 비밀보장) (현행)

현행	개정안
략)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u>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생략) ② 재정경제부장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u>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생략) ② 재정경제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외국환업무</u>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u>지급 또는 수령</u>에 관한 자료를 중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 ----- ----- -----<u>외국환업무취급기관</u> <u>등의 장,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외국환업무취급기</u> <u>관등,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 ----- ----- -----.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외국환업무 및 가</u> <u>상자산거래업무</u>----- ----- ----- -----<u>지급, 수령 또는</u>

현행	개정안
· 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u>외국환업무</u>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u>외국환업무</u>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u>외국환업무</u>를 한	<u>가상자산거래</u>----- ----- -----. 제27조(벌칙)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u>가상자산거래업무를 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벌칙) ① ----- ----- -----. ----- -----. 1. ----- ----- -----<u>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업무</u>----- -----<u>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업무</u>----- -----<u>외국환업무 또는</u>

현행	개정안
자를 포함한다)	<u>가상자산거래업무</u> ----- -----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u>외국환중개업무</u> 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u>외국환중개업무</u> 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u>외국환중개업무</u> 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 ----- ----- ----- <u>외국환중개업무</u> 또는 <u>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 ----- - <u>외국환중개업무</u> 또는 <u>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 ----- <u>외국환중개업무</u> 또는 <u>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u>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u> 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0조(몰수·추징) ----- ----- ----- ----- ----- <u>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u> -----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과태료) ① ----- ----- -----.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1. ----- -----

현행	개정안
를 하고 <u>외국환업무</u>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u>외국환중개업무</u>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u>외국환중개업무</u>를 한 자 3. ~ 6. (생략) ② ~ ⑤ (생략)	-----<u>외국환업무</u> 또는 <u>가상자산거래업무</u>----- 2. ----- -----<u>외국환중개업무</u> 또는 <u>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 -----<u>외국환중개업무</u> 또는 <u>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u>-----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48

참고 1

가상자산 활용 불법거래 사례 (자료 : 재정경제부)

I. 조세탈루

※ 관세청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점 악용한 사례 증가

- ☐ '21.4~'22.8월 홍콩 등에 금, 귀금속 등을 중계무역 수출하고 대금(2,039억원 상당)을 대표의 개인지갑에 가상자산으로 수령
- ☐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하거나, 저가의 철스크랩으로 수출단가를 낮춰 신고, 차액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업자를 통해 수령
* 밀수출 998억원, 가격조작 3,743억원, 법인세 탈루 700억원 상당

II. 범죄악용

※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알기 어려워 범죄사실 확인·특정에 어려움

- ☐ 해외 원정 도박꾼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영수한 후 가상자산(테더)을 해외로 전송하여 현지에서 외화로 전환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160억원 상당의 해외 도박자금을 불법 환치지
* ①국내 영업책은 SNS로 '코인 환전' 홍보, 해외 원정도박 고객 모집해 원화 영수
②가상자산 조달책은 국내 영업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즉시 국내에서 확보한 가상자산 테더를 외국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 영업책에게 전송
③해외 영업책은 전달받은 가상자산을 현지 카지노 등에서 외화로 환전해 고객에 전달
- ☐ 국내 담배 밀수입 조직이 베트남으로부터 담배 158만갑(원가 29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입해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대금 지급
- ☐ A는 국내 마약 공급책으로 자금세탁원인 B명과의 해외 거래소에 개설된 지갑주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수금
 - B는 수금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자금세탁

참고 2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국 규제 현황 (자료 : 재정경제부)

1 유럽연합

- 기본법에 해당하는 「**EU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R)**」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분류와 규율 도입
 - 단일 법정통화에 연계된 경우에만 지급결제 수단으로 허용
 - 금융안정성에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은 시스템 전자화폐(**Significant EMT**)라고 규정,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에 감독 권한 부여
 - * (EMT) E-Money Token, 하나의 특정 법정통화에 연계시킨 스테이블코인 (ART) Asset-Referenced Token, 복수의 법정통화를 포함, 자산집합의 가치에 연계
- 또한,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정인 「**TFR***」을 별도 제정하여, '25.1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트래블 룰(traveul rule) 적용
 -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송인 및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여 제출 의무
 - *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2 영 국

- '24년 재무부·영란은행·금융감독청(**FCA**)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마련·발표하고 의견수렴 중
 - 하나 또는 복수의 법정통화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Fiat-Based Stablecoin)만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규제대상으로 편입
 - * "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금융기술이 핀테크와 연계하여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 내) 영국 내에서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을 **Regulated Stablecoin**이라고 명명
 - (해 외) 금융감독청이 인가한 해외결제 대행업자가 영국 국내법에 따라 발행한 코인은 **Approved Stablecoin**이라고 명명

- 외국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거래에** 사용될 경우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한 있음
 - *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GBP로 변환하는 거래는 외환거래(환전)으로 간주
 - ※ 해외 발행자는 영국에서 운영시 영국의 라이선스 및 AML 규정 준수 필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감독청이 아닌 영란은행이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감안하여 건전성 감독 수행**

3 미 국

- 단일법령이나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되는 **별도법령은 없으며**, 재무부(**OFAC***, **FinCEN***), **FRB**, **SEC** 등 연방기관 연합을 통해 감독
- (**FinCEN**) 「**은행비밀보호법(BSA)**」에 의거하여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간 거래 감독 수행
 - 국경간 송금이나 스테이블코인과 화폐간 전환에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자는 BSA에 따라 송금업체로 간주
 - 스테이블코인이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변환시 외환거래로 간주하며, 외환거래나 국경간 송금을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거래소는 **FinCEN**에 **MSB***로 등록 필요
 - * Money Services Business: 1일 기준 인당 1천불 이상의 화폐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환전, 수표·여행자수표 추심, 송금수표(money order) 판매 등 포함
 - 해외 발행자도 **FinCEN**에 **MSB**로 등록하고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미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 차단 가능
- (**OFAC**)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미국 제재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특히 **제재 우회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조사·적발 강화
 -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재 대상과의 거래 지원 혐의로 조사·처벌 (Bittrex 사례 등)
 - 또한, **미국인이 DeFi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경우 미국 제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침 발표

4 일 본

- 「외국환 및 대외무역법(FEFTA)」, 「결제서비스법」 등을 통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외화 거래에 준하여 규율
 - ※ 다만, 일본은 외환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로서,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등을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평시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황
-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는 회사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국경간 환전 또는 송금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라이선스 필요
 - 특히, 일본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자신의 코인이 일본인 관련 결제·송금에 사용시 일본의 외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감독 및 보고의무 부과
 - 일본인이 스테이블코인을 외화로 변환시 외환거래로 간주
- 스테이블코인을 양도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거래성격·가액·거래 상대방 등을 재무부 또는 금융청(FSA)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
 -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통해 자본의 급속한 이동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변동성이 심각한 경우 자본통제에 준하는 규제 대상

5 싱가포르

-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과 관련된 국경간 결제 또는 송금에 사용되는 경우 「지불서비스법(PSA)」와 기타 통화청(MAS) 지침 적용
- USD 또는 EUR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거래는 외환거래로 간주하여 MAS의 규제대상에 포함
 -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또는 송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싱가포르 외환규정 적용되며, 해외 발행자는 필요시 MAS 보고
 - ※ 금융안정성을 위반할 수준의 대규모 국경간 자본이동은 MAS 승인·감독 대상
- 국경간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PSA에 따라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외환거래 관련 MAS 규정 준수 의무 보유